

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3-13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6. 14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보전,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. ----- (안 제2조 제1항)
- 나.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,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. (안 제3조)
- 다. 위탁시에는 위탁기간, 위탁조건, 수탁자의 의무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----- (안 제4조 제1항)
- 라.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으로 충당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. ----- (안 제5조)

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파주시 행정구역내의 모든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로 한다.

제3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.

제4조(위탁계약)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시에는 위탁기간, 위탁조건, 수탁자의 의무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위탁운영비 지원 등)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하수처리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.

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탁의 취소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

2.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물 등에 출입하여 위탁사무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9조(손해배상)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,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준용규정)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